

"신뢰받는 감사원, 국민과 함께 합니다."



# 감 사 원

바른감사  
바른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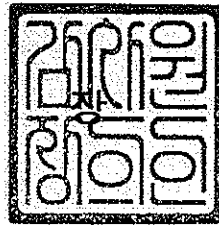
수신 참여연대 귀하 (우110-043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경유)

제목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통보

1. 국민 다수의 공익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4. 9. 18.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접수번호: 공익2014-123호, 법무부의 검사인사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1부. 끝.

감 사 원



감사주사보

이철재

부감사관

박종욱

감사청구조사 전결 2014. 12.  
5.  
국 조사2과장 이희두

협조자

시행 조사2과-4172

(2014. 12. 5.)

접수

우 110-7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삼청동, 감사원)

/ <http://www.bai.go.kr>

전화번호 02-2011-3505

팩스번호 02-2011-2765

/ [fethe3@korea.kr](mailto:fethe3@korea.kr)

/ 비공개(5,6)

[붙임]

##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법무부의 검사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청구이유	조사확인결과
<p>○ 검찰청법 제44조의 2(검사의 파견금지)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 후 바로 신규임용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등 편법적인 검찰 인사를 운용</p>	<p>○ 검사를 사직한 후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동안은 현직 검사 신분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근무 또는 겸직근무하는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던 자가 다시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등의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재임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고</li><li>- 이러한 근무형태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령 개정 등 입법적으로 접근함이 타당하여 감사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li></ul>